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 5. 1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5월 1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1999년 5월 17일 제64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조수만)

가. 제안이유

-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6 경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98. 12. 31자로 폐지됨에 따라 경형자동차(승용·승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 배기량이 800cc 미만)에 대한 면허세를 5종으로 부과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시행되어 동법에서 위임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규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도 불구하고 5종으로 부과함(안 제11조의2)
-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함(안 제13조의2)
-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함(안 제20조의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송성만)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경형자동차의 사용권장을 위해 이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치 않고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규정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연간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바 없고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된 조례준칙(안)에 따른 정비로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1
------------------	----

제출년월일 : 1999. 5. 1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6 경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98. 12. 31자로 폐지됨에 따라 경형자동차(승용·승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 배기량이 800cc 미만)에 대한 면허세를 5종으로 부과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 시행되어 동법에서 위임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규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도 불구하고 5종으로 부과함(안 제11조의2)
-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함(안 제13조의2)
-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함(안 제20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사항 : 없음.
- 라.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5종으로 부과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영등포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영등포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다만, 제11조의2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감면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 11조의 2(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u>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 한다.</p>
<u><신 설></u>	<p><u>제 13조의 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u>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p>
<u><신 설></u>	<p><u>제 20조의 2(영등포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u> 영등포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p> <p>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